

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사법연수생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(1.7%)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봉급 인상분을 규칙에 반영함(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)
 -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: 월 2,070,000원(2022년도에 인상되지 않은 당시 공무원 총 보수 인상률 1.4% 반영)
 -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 : 월 2,163,000원

4.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2,007,300원”을 “2,07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2,126,800원”을 “2,163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보수의 기준)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</p> <p>1. 「사법연수원 운영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<u>2,007,300원</u></p> <p>2.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<u>2,126,800원</u>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보수의 기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2,070,000원</u>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2,163,000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932